

[윤리 행동규칙]

○ 제 1 장 총칙

- 목적
 - 본 규칙은 사내, 사외의 업무를 투명,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동 기준을 정하여 이를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적용범위
 - 본 규칙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
○ 제 2 장 고객중심 경영

- 고객존중
 -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,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.
 -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.
 - 제품광고, 홍보 시 해당사항이 회사의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며, 환경 오염, 인권 침해 등의 비윤리적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 - 고객의 요구에 맞는 “최고의 제품”을 “최적의 가격”으로 “최단의 시간”에 공급한다.
 - 당사에서 제공되는 알루미늄과 관련된 모든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통한 “고객 감동 실현”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.
- 고객보호
 - 고객의 이익과 안전,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- 고객사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제품 품질관련 하자에 따른 정당한 교환 또는 반품, 기타 이의 제기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, 신속히 회사의 규정과 법규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.
 -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, 고객의 개인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하여야 하며, 고객의 동의 또는 관련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임직원 중 고객 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반드시 회사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.

○ 제 3 장 사회책임 경영

- **경쟁사와 공정한 경쟁**
 -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.
 -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 -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 - 고객사, 거래처, 협력회사 등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규범을 알리고 회사의 윤리경영 기준 준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**사회발전에 기여**
 -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 - 사업수행 중 당면하는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.
- **환경보호**
 -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.
 - 사업 및 영업활동 등 전 과정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의 지속가능 사용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.
 - 국내외 환경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.

○ 제 4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- **기본윤리**
 - 임직원은 신앙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,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 자세를 유지한다.
 - 임직원 각자가 신앙을 대표하는 자세로 항상 예의 바른 행동과 품위 있는 언어로써 신앙인의 명예를 지킨다.
 -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,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며,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,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 - 공.사를 명확히 구분하며,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.
 -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.
 -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.
 -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.
 -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직 시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
- **사명의 완수**

- 임직원은 회사 경영이념을 공유하고, 사회법규 및 회사의 업무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,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-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.

● 제 5 장 윤리행동규칙 준수 의무

- **윤리행동규칙의 적용범위**

- 본 규칙은 신양금속공업 및 그 자회사, 관계회사 등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.
- 임직원은 관련 법규를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며, 본 규칙과 법규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해당 법규를 우선 적용하여 준수하여야 하되, 본 규칙이 법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거나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요구할 경우, 본 규칙을 적용하여 준수하여야 한다.

- **건전한 기업문화 정착**

-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 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간다.
-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..

- **이해상충행위 금지**

-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-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

- **거래의 투명성 확보**

- 회사의 모든 회계 관련 기록은 규정 및 거래 실질과 합치되어야 하며,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의 의사 결정과 투자자 또는 규제 기관에 대한 보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.
- 임직원은 허위보고, 누락, 임의 변경 등을 통해 거래 실질을 왜곡하거나 부정 또는 위법한 거래를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.

○ 제 6 장 부 칙

- 시행시기
 - 본 규칙은 2021년 1월 2일 부로 시행한다.